

| |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
| 의결연월일 | 2025. . . |

| |
|----------|
| 의결 사항 |
|----------|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(안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5. 7. 14. |
| 발 의 자 | 김재우 의원 |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(안)

(김재우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: 2025. 7. 14.

발의자: 김재우 의원(1인)

찬성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
김영태, 김춘남, 박세채, 소진혁
신용하, 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
장미경, 추은희 의원(14인)

1. 주 문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주요내용

| 요구의원 | 출석일자 | 출석대상자 | 출석장소 | 출석요구사항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김재우 |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(1일간) |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|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|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, 사내버스 요금 체계 및 운영 현황에 관해 |

4. 참고사항(관련법령)

가. 지방자치법 제51조

나.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

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15.2.27>